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2가단1034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6. 7.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5. 14.자 증여계약은 19,436,9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43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노진영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동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20층 아파트

지하층 37.120㎡, 1층 158.850㎡, 2층 내지 20층 각 214.50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동구 대 4938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9.7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9383.9분의 29.89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주민등록번호 1)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 는 위 양수금 채무의 '채무자' 이며, 피고는 사해행위로서 위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약의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D 주식회사는 2017. 10. 24.경 위 C 에게 금 1,500만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16.9%,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 10%' 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신청서 참조).

그런데 위 C 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D (주)는 2019. 9. 23. 원고에게 위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 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75684호), 원고승소판결이 2020. 10. 12.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C 는 원고에게 금

19,436,940원 및 그 중 금 12,127,023원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 중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는 2018. 5. 14.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증여행위의 사해성’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C는 위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듯 한데,

사실상 위 부동산이 유일 소유 재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위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고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C의 2018. 5. 14.자 증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독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독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 C의 배우자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위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이후인 2018. 6. 7. ‘채권최고액 8,500만원,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 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20. 7. 2. ‘권리자 동구(인천광역시)’ 인, 2020. 10. 12. ‘권리자 동구(인천광역시)’ 인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 뿐만 아니라 가액반환청구도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